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)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4. 1. 26.

동 탄 9 동 장



1. 공고기간 : 2024. 1. 26. ~ 1. 13.
2. 공고 대상자 및 사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발급기간	공고사유
1	이*서	07.01.17.	2024.2.1. ~ 2025.1.31.	폐문부재
2	최*은	07.01.02.	"	"
3	장*원	07.01.17.	"	"
4	이*희	07.01.11.	"	"
5	김*	07.01.05.	"	"
6	김*리	07.01.05.	"	"

3. 안내

가.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, 사진 1매 (6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가로×세로 3.5cm×4.5cm 탈모상반신 사진)를 지참하고 발급기간 안에 화성시 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소명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탄9동 주민등록증 담당(☎031-5189-5340)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